

제품환경성 시험분석서비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품시험분석실

분석은 정확하게,
Green은 선명하게



신뢰받는 시험분석으로
친환경제품 확산을 지원합니다

기관 소개



제품 환경성 시험분석의 신뢰 기준을 제시합니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품시험분석실은 2012년 개소 이래 제품 환경성 시험분석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환경표지 인증시험을 비롯하여 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검사,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자동차 촉매제 사전검사, 포장방법 검사 등 주요 환경 시험·검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실내공기질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과 ILAC MRA 국제 상호인정을 기반으로 시험결과의 신뢰성과 국제 통용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중소기업의 시험분석 부담을 줄이고 제품의 환경성과 품질 향상을 지원하여 환경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왜 '제품시험 분석실'과 함께 해야할까요?

누적 시험 건수

약 **120,000** 건 (2012~2025 누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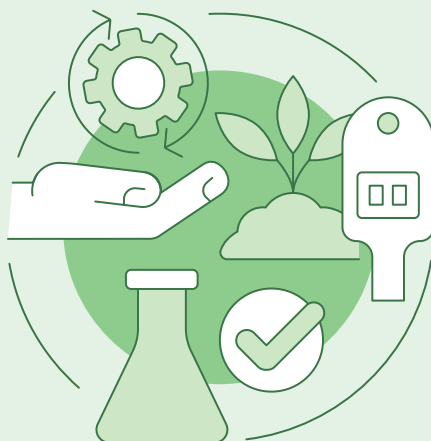


연혁



- **2013. 03.**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취득
- **2013. 11.**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 지정
- **2012. 11.**
환경분석센터 개소
환경표지 인증시험 서비스 개시

시험 인프라 및 공인 역량



시험 인프라



- 시험분야별 주요 실험실 총 22개 실 운영
 - 유기실험실, 무기실험실, 기기분석실, 제품성능시험실, 항온항습실, 소형챔버 방출시험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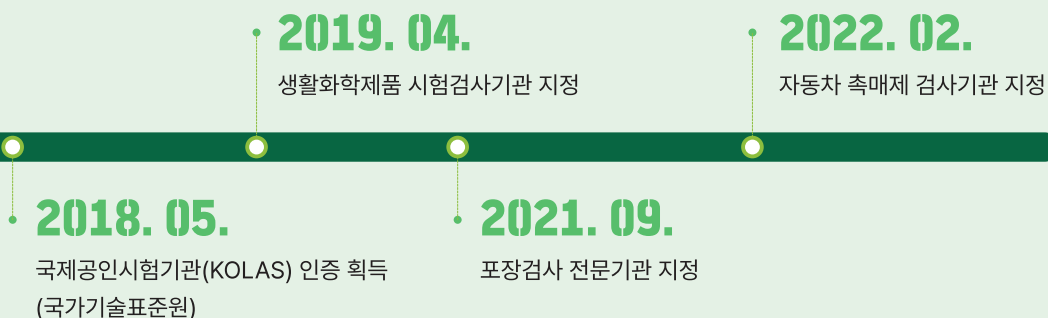
공인 역량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 인정
실내공기질 분야



ILAC MRA 국제 상호인정
시험결과 국제 통용



CONTENTS

01

시험신청
절차

05

02

환경표지 시험 및
일반의뢰 시험

06

03

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검사

10

04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확인검사

13

05

자동차 촉매제
(요소수) 사전검사

15

06

포장방법
검사

17

07

기업지원
서비스

19

08

주요
문의사항

22



시험신청 절차

» 시험목적 및 시험항목·수량에 따라 시험기간, 수수료, 처리절차가 달라지므로
신청 전 필요한 시험서비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신청 단계



1단계

시험상담

시험항목·시험방법·시험기간·
시료량 상담, 이메일 및 전화 상담 가능



2단계

신청서 작성 및 시료 제출

신청서(시험의뢰서) 작성 후
시료와 함께 제출, 우편·택배 또는
현장 방문 접수



4단계

수수료 납부

견적서 확인 후
시험분석 수수료 납부



3단계

견적서 발행

시료 및 신청서 확인 후
신청인 메일로 견적서 발행



5단계

시험분석

시험분석 진행 중
시험 변경 및 취소 불가



6단계

시험성적서 발급

시험성적서 발급 및 수령

시험 참고사항



신청 정보문의



- 환경표지 인증시험 : 시험분석 신청서는 인증심사원이 작성하며, 시험 성적서는 기술원 인증심사실로 전달되어 심의위원회 이후 수령
- 그 외 시험 : 신청인이 시험분석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료와 함께 제출하며, 시험성적서는 우편 또는 메일로 수령

- 신청 채널 : 에코스퀘어(시험분석 신청)
- 접수처 문의 : 대표번호 1800-6750

eacinfo@keiti.re.kr



환경표지 인증

제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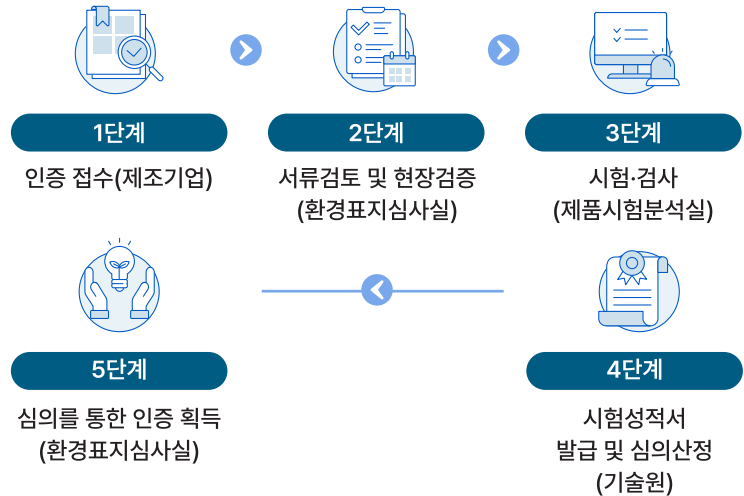
- 친환경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친환경 제품 개발·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제품을 선별하여 로고와 설명을 표시하는 자발적 인증제도
- 제품시험분석실은 환경표지 인증 취득을 위한 제품 환경성 시험분석 서비스를 제공

법적 근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사업)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환경표지 인증단계



대상제품군



- 사무용 기기·가구 및 사무용품
- 가정용 기기·가구
-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
- 산업용 제품·장비
-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 복합 용도 및 기타

시험검사 기간



- 영업일 기준, 접수일(입금일)로부터 최대 20일 이내
(시험분야별 세부 기간 상이)

» 환경표지 시험분야 및 세부항목

무기물질 시험 · 시험기간 12일

(원, VAT 별도)

시험항목	시험방법	수수료
4대 중금속 함량 (Pb·Cd·Hg·Cr6+)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 KS C IEC 62321-5,4·7-1 등	각 24,000
중금속 함량 (Pb·Cd·As·Sb·Ba·Co·Cu·Ni 등)	KS M 0032, KS G ISO 8124-3, KS K 0731	각 24,000
Ni 방출량	KS K 0853	46,000

- 주요 대상제품군 : EL172 가구, EL241 페인트, EL246 실내용 바닥 장식재, EL250 창호 및 창호 부속품, EL261 가스보일러, EL483 침대 등

유기물질 시험 · 시험기간 15일(생분해도 35일)

(원, VAT 별도)

시험항목	시험방법	수수료
VOCs 함량	KS M ISO 11890-1,2	140,000
VACs 함량	KS M 0027, KS M 0031	243,000
염화비닐단량체	KS K 0730	57,000
이소티아졸리논계 4종 (CMIT·MIT·BIT·OIT)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시험 · 검사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	동시 260,000 / 각 65,000
프탈레이트류 7종 (DEHP·BBP·DBP·DIBP· DIDP·DINP·DNOP)	IEC 62321-8	동시 182,000 / 각 52,000
염소화 페놀류 3종 (PcP·TeCP·TCP)	KS K 0733	동시 110,000 / 각 55,000
유기주석화합물 9종 (TBT·TPT·DBT·DOT· TTBT·MBT·MOT·TCyT·TOT)	KS K 0737	동시 400,500 / 각 89,000
총 브롬(Br)	KS M 0180	41,000
PAHs	KS M 6956	432,000

- 주요 대상제품군 : EL108 문구, EL177 학생용 책상 및 의자, EL241 페인트, EL244 건설용 방수재, EL246 실내용 바닥 장식재, EL312 가방, EL605 산업용 세정제, EL611 윤활유, EL722 고무제품, EL765 소화기 등

소형챔버 방출시험(KOLAS 인정 분야) · 시험기간 20일

(원, VAT 별도)

시험항목	시험방법	수수료
TVOC·톨루엔· 폼알데하이드 방출량 (고상·액상·실란트)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	2,338,000

- 주요 대상제품군 : EL172 가구, EL174 사무용 칸막이, EL175 의자, EL241 페인트, EL251 접착제, EL252 장식용 합성수지 시트, EL259 건축용 실링재, EL260 벽지 및 종이제 내장재 등

물성시험 · 시험기간 15일

(원, VAT 별도)

시험항목	시험방법	수수료
화장지 인장강도	KS M 7710, KS M 7099	74,000
화장지 습윤인장강도	KS M 7710, KS M 7099	79,000
알칼리 해리성 및 알칼리 분산성	EL103	54,000
재생용지 사용 적합성	EL104	105,000
토너카트리지 인쇄용량 (10,000매 이하)	EL104	106,000
토너카트리지 인쇄용 (10,000매 이상)	EL104	213,000
배경농도·오염결손 선	EL104	6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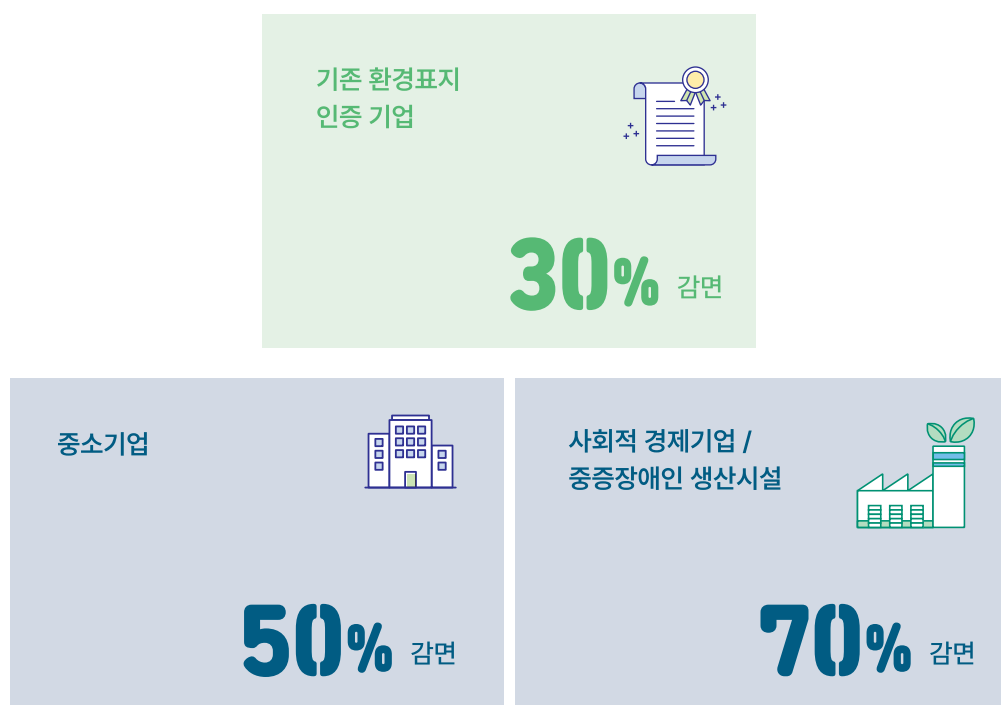
- 주요 대상제품군 : EL103 종이 접착테이프, EL104 토너카트리지, EL248 벽 및 천장 마감재, EL321 화장지

※ 명시된 시험기간은 영업일 기준

※ 위 수수료는 시험수수료이며, 환경표지 인증심사 수수료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 환경표지 시험수수료 감면혜택

기업특성별 수수료 감면(가장 높은 감면율 적용)



수수료 감면 대상 및 구비서류

구분	환경표지 인증	감면율	구비서류
대기업	미보유	0%	사업자등록증
대기업	보유	30%	사업자등록증·환경표지 인증서
중소기업	무관	50%	사업자등록증·중소기업확인서
사회적 경제기업	무관	70%	사업자등록증 및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자활기업 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중 택1

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검사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검사제도

제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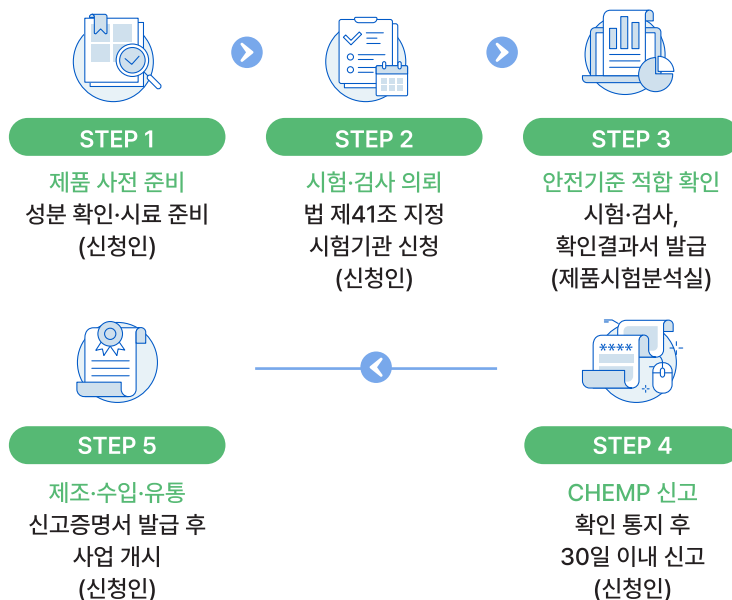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자는 제품을 유통하기 전에 화학 물질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신고·승인번호를 취득한 후 제품에 표시하여 판매
- 제조·수입업자가 의뢰한 제품에 대하여 시험·검사를 통해 확인결과서 발급

법적 근거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
- 동법 제41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신고방법



운영 시스템 및 사후관리



- 신고 관리 : CHEMP(화학제품관리시스템, chemp.mcee.go.kr)
- 정보 공개 : 초록누리(ecolife.me.go.kr)
- 표시 의무 : 안전기준 확인 마크, 사용상 주의사항·응급처치 방법 표시
- 갱신 주기 : 3년

시험검사 기간



- 영업일 기준, 접수일(입금일)로부터 20일 이내

» 신고대상 품목 및 검사 수수료

근거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고시에 따른 신고대상 품목별 관련 제품

주요 검사항목



- 유해물질 분석 : 함유금지물질·함량제한물질·사용제한물질 등 제품별 유해물질 함량 확인
- 안전기준 적합성 : 안전기준 준수 여부 평가
- 용기·포장·중량 및 어린이보호포장 : 해당 제품에 한하여 적용

생활화학제품

(원, VAT 별도)

분류	품목	구분	검사수수료
세정 제품	세정제	염산 또는 황산 or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 포함 제품	일반용, 자동차용(실내용) 403,000
			자동차용(실외용) 379,000
		그 외 제품	일반용, 자동차용(실내용) 339,000
			자동차용(실외용) 315,000
	제거제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 포함 제품	247,000
		자동차용(외부용)	197,000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 포함 제품)	165,000
		자동차용(외부용)	215,000
세탁 제품	세탁세제	계면활성제 포함(생분해도 ISO 7827)	858,000
		계면활성제 미포함 제품	69,000
	표백제	일반용	69,000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 포함제품	101,000
		과산화수소 포함제품	101,000
	섬유유연제	계면활성제 포함(비분사형)	1,761,000
		계면활성제 미포함(비분사형), 건조기 전용 시트형 제품	972,000
		계면활성제 미포함(분사형)	842,000
		계면활성제 포함(분사형)	1,631,000
코팅 제품	광택 코팅제	일반용(분사형)	493,000
		자동차용(외부용)	469,000
		그 외 제품	469,000
	특수목적 코팅제	정전기방지제	445,000
		그 외의 용도	330,000
		자동차용	330,000
	녹 방지제	녹 방지제	280,000
	윤활제	윤활제	304,000
	다림질 보조제	다림질 보조제	315,000
	마감제	마감제	100,000
	경화제	경화제	65,000

접착· 접합제품	접착제	일반용(비분사형)	554,000
		일반용(비분사형) * PVC	604,000
		순간·강력용(비분사형)	339,000
		순간·강력용(비분사형) (주성분 시아노아크릴레이트)	439,000
		일반용(분사형)	530,000
		일반용(분사형) * PVC	580,000
		순간·강력용(분사형)	480,000
		순간·강력용(분사형) (주성분 시아노아크릴레이트)	530,000
	접합제	접합제	393,000
방향· 탈취제품	방향제	경화촉진제	50,000
		비분사형	310,000
		분사형	555,000
	탈취제	지속방출형	555,000
		비분사형(액상)	277,000
		비분사형(액상 외)	245,000
		분사형(액상)	392,000
		분사형(액상 외)	360,000
		지속방출형	360,000
염색· 도색제품	물체 염색제	물체 염색제	100,000
	물체 도색제	물체 도색제	174,000
인쇄 및 문서 관련제품	인쇄용 잉크· 토너	인쇄용 잉크·토너	50,000
	인주	인주	48,000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용기시험만 진행(액상)	29,000
		용기시험만 진행(비액상)	17,000
미용제품	미용 접착제	주성분 시아노아크릴레이트	265,000
		그 외 제품	165,000
여과용품 관리제품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50,000
살균제품	살균제	일반용	304,000
		칫솔·허클리너용	336,000
		어린이 용품용	354,000
	살조제	비분사형	100,000
		분사형	165,000
구제제품	기피제	살벌레·좀벌레용	130,000
		날벌레	115,000
보존·보존 처리제품	목재용 보존제	목재용 보존제	200,000
기타	초	발광용	24,000
		발향용(액상 외)	154,000
		발향용(액상)	204,000
	습기제거제	습기제거제	170,000
	공연용 포그액	공연용 포그액	100,000
	인공 눈 스프레이	인공 눈 스프레이	32,000

공통항목 시험(용기강도 및 누수 등)

(원, VAT 별도)

시험항목	수수료
겉모양	5,000
중량 및 용량	6,000
용기강도	6,000
용기강도(캡슐형)	9,000
용기누수	6,000
수소이온농도(pH)	6,000
동점도	55,000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확인검사

제도 개요



- 어린이의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 신축·증축(33 m²)·수선(70 m²) 후 30일 이내 검사 신청

법적 근거



- 환경보건법 제23조(어린이 활동공간의 위해성 관리)
- 동법 제23조의2(검사기관의 지정 등)

검사대상



-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한 경우(신규로 인가되는 경우 포함)
- 어린이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m² 이상 증축한 경우
- 어린이활동공간을 70m² 이상 수선하는 경우
(도로·마감재료 및 합성고무바닥재 개보수 포함)

확인·검사 체계



1단계

확인·검사 의뢰
(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



2단계

현장 시료채취·정밀 시험·검사
(제품시험분석실)



4단계

검사결과 접수
(신청인 및 감독기관)



3단계

결과증명서 발급
(제품시험분석실)

검사대상 어린이활동공간 범위



- 어린이놀이시설, 어린이집 보육실, 유치원 교실, 초등학교 교실 및 도서관, 특수학교 교실, 완구제공영업소(레고방·슬라임방·블럭방), 기타 유원시설영업소(키즈카페)

시험검사 기간



- 영업일 기준, 시료채취일로부터 20일 이내

» 검사 종류 및 수수료

검사 종류



- 기본검사 : 육안 검사 및 중금속 간이측정기(XRF) 검사, 기준치 초과 시 정밀검사 연계
- 정밀검사 : 도료·마감재·바닥재·토양 등 5개 분야 정밀 분석, 실내공기질 측정, 환경안전관리기준 적합 판정

기본검사 수수료(환경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원, VAT 별도)

분야	시험항목	수수료
실내 어린이활동공간 (10개 교실 또는 75m ² 기준)	육안 및 중금속 간이측정기 검사	150,000
실외 어린이활동공간 (놀이터 1개 기준)	육안 및 중금속 간이측정기 검사	100,000

수수료 및 시험기간

(원, VAT 별도)

구분	수수료
실내 어린이활동공간(10개 교실 또는 75m ² 기준)	150,000
실외 어린이활동공간(놀이터 1개 기준)	100,000

(원, VAT 별도)

분야	시험항목	수수료
도료나 마감재료	납·카드뮴·수은·6가크로뮴	각 44,200
	프탈레이트류 7종 (합성수지 재질 바닥재 표면재료)	150,000
도료·마감재료 오염물질 방출	소형 체임버·클린룸 (폼알데하이드·TVOC)	1,250,000
	폼알데하이드	124,000
	총휘발성유기화합물	139,000
목재 방부재	크레오소트유 1·2호, CCA계 1·2·3호 전부	160,000
모래 등 토양	납·카드뮴·수은·6가크로뮴·비소	각 44,200
	기생충 및 기생충란	39,300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 표면재료	납·카드뮴·수은·6가크로뮴	각 44,200
	폼알데하이드	45,000
	프탈레이트류 7종	150,000

- 수수료는 20퍼센트 범위에서 가감 가능하며, 공무원여비규정의 여비에 준하는 출장비 추가 가능

자동차 촉매제(요소수) 사전검사

» 요소수 사전검사 제도

제도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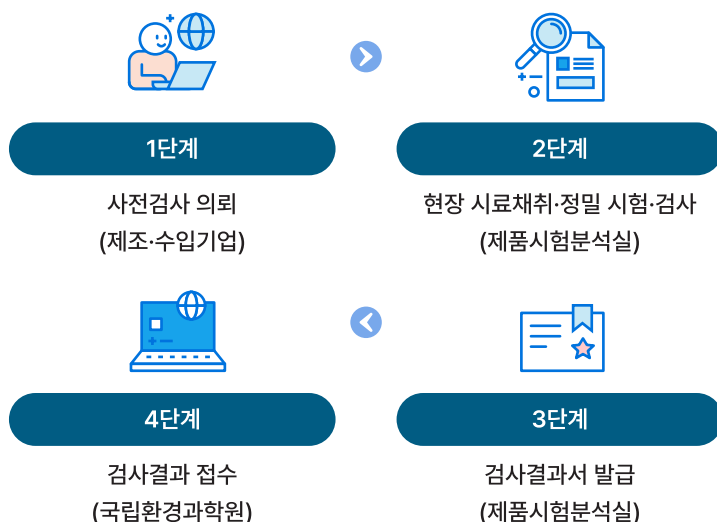
- 자동차 촉매제 제조·수입업자가 제품의 판매 및 사용 전에 검사기관에서 제조기준 적합 여부에 대한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 검사 제도
- 대상제품 : 자동차 촉매제(요소수)

법적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 동법 제74조의2(검사업무의 대행)

사전검사 체계



제출서류



- 검사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사업자등록증, 생산공정도, 완제품 사진
- 수입 업체의 경우 : 수입증빙서류(신고필증 등)
- 재검사의 경우 : 기존 검사결과서

검사기간



- 영업일 기준, 접수(입금) 후 시료채취일로부터 20일

▶ 시험항목 및 수수료(18개 항목)

촉매제 적합여부 판정기준

항목	단위	기준	
		최소기준	최대기준
요소함량 1)	%(m/m)	31.8	33.2
밀도@20°C 2)	kg/m ³	1087	1093
굴절지수@20°C 3)	-	1.3814	1.3843
알칼리도 NH3	%(m/m)	-	0.2
뷰렛	%(m/m)	-	0.3
알데히드	mg/kg	-	5
불용해성물질	mg/kg	-	20
인(PO4)	mg/kg	-	0.5
칼슘(Ca)	mg/kg	-	0.5
철(Fe)	mg/kg	-	0.5
구리(Cu)	mg/kg	-	0.2
아연(Zn)	mg/kg	-	0.2
크롬(Cr)	mg/kg	-	0.2
니켈(Ni)	mg/kg	-	0.2
알루미늄(al)	mg/kg	-	0.5
마그네슘(Mg)	mg/kg	-	0.5
나트륨(Na)	mg/kg	-	0.5
칼륨(K)	mg/kg	-	0.5

비고 : 1), 2), 3)의 목표값은 다음과 같다.

1) 목표값 32.5%, 2) 목표값 1089.5kg/m³, 3) 목표값 1.3829

검사항목당 검사수수료

(원, VAT 별도)

구분	수수료
촉매제	
가. 요소수 사전검사	
1) 요소(UREA) 함량	33,700
2) 밀도 20°C	12,900
3) 굴절률 20°C	27,900
4) NH3의 알칼리도	23,500
5) 뷰렛(Biuret)	62,300
6) 알데히드(Aldehyde)	70,400
7) 불용성	25,500
8) 인산염(PO4)	75,200
9) 칼슘(Ca)	21,300
10) 철(Fe)	21,300
11) 구리(Cu)	21,300
12) 아연(Zn)	21,300
13) 크롬(Cr)	21,300
14) 니켈(Ni)	21,300
15) 알루미늄(Al)	21,300
16) 마그네슘(Mg)	21,300
17) 나트륨(Na)	21,300
18) 칼륨(K)	21,300

● 수수료 내 출장비 추가 가능

포장방법 검사

» 포장방법 검사 제도

제도 개요



-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제조·수입·판매자가 불필요한 포장을 억제하도록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제도
- 제품시험분석실은 포장방법 검사(과대포장 검사)를 수행

법적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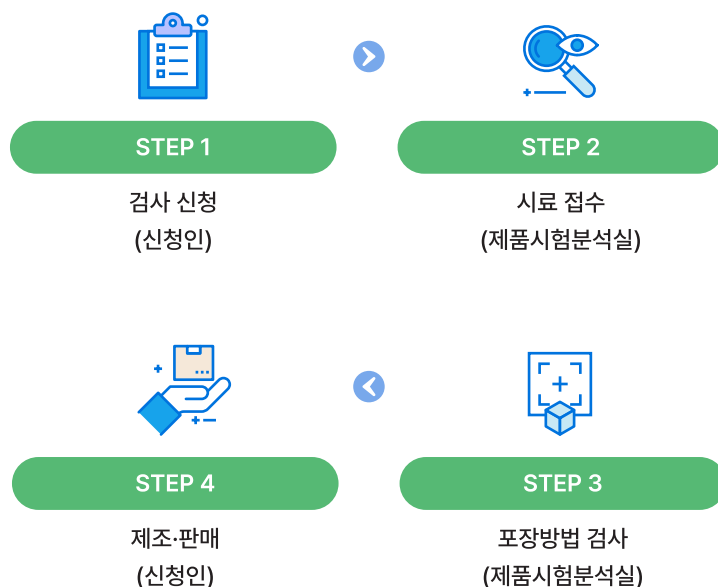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
(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 동법 시행령 제7조(포장의 재질·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검사 내용



- 포장공간비율 : 포장용기 대비 빈 공간 비율
(10~35% 이내, 제품군별 상이)
- 포장횟수 : 포장재로 씌운 횟수(1~2차 이내)
- 단위제품·종합제품 기준 적합성 검사

운영 흐름



» 대상 제품군 및 검사기준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 기준

제품의 종류			기준	
			포장공간비율	포장횟수
단위 제품	음식료품류	가공식품	15% 이하	2차 이내
		음료	10% 이하	2차 이내
		주류	10% 이하	2차 이내
		제과류	20% 이하 [데코레이션 케이크는 35% 이하]	2차 이내
		건강기능식품	15% 이하	2차 이내
	화장품류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	15% 이하	2차 이내
		그 밖의 화장품류(방향제 포함)	10% 이하(향수 제외)	2차 이내
	세제류	세제류	15% 이하	2차 이내
	잡화류	완구 · 인형류	35% 이하	2차 이내
		문구류	30% 이하	2차 이내
		신변잡화류(지갑 및 허리띠만 해당)	30% 이하	2차 이내
	의약외품류	의약외품류	20% 이하	2차 이내
	의류	와이셔츠류 · 내의류	10% 이하	1차 이내
전자제품류	차량용 충전기, 케이블, 이어폰 · 헤드셋, 마우스, 근거리 무선통신(블루투스) 스피커 (300그램 이하의 휴대용 제품으로 한정)	35% 이하	2차 이내	
종합 제품	1차식품, 가공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 건강기능식품, 화장품류, 세제류, 완구 · 인형류, 문구류, 신변잡화류, 의약외품류, 와이셔츠류, 내의류	25% 이하	2차 이내	

- 단위제품: 1회 이상 포장한 최소 판매단위 제품
- 종합제품: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

» 검사수수료 및 검사기간

검사수수료

(원, VAT 별도)

검사항목		수수료
포장재질 ¹⁾		52,000
포장횟수		18,000
포장공간 비율	단위제품	35,000
		45,000 ²⁾
	종합제품	44,000
		57,000 ²⁾

- 폴리비닐클로라이드(PVC) 재질 여부
- 검사대상 구성품이 5개 이상인 경우 30% 가산

검사기간

- 검사 수수료 입금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최대 7일 소요

**시험수수료
감면 혜택**

- 환경표지 인증 제품 보유 기업 : 30% 감면
- 중소기업 : 50% 감면
- 사회적 경제기업 /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 70% 감면

환경표지 인증 사전테스트 지원 서비스

서비스 개요

- 환경표지 인증 신청 전에 환경성 기준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시험분석을 지원하는 서비스

지원 대상

- 기준 대상제품군의 환경표지 미인증 기업(신청일 기준)

대상 항목

- 대상 항목 : 환경표지 인증기준 중 "4. 환경 관련 기준" 시험항목

결과 제공 방법

- 결과 제공 : 해당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보고서

지원 범위

- 기업당 시험수수료 비용 50만원 범위(기업 부담금 10%)

지원 대상제품군(32개)

EL코드	제품군	EL코드	제품군
EL103	종이 점착테이프 및 종이 점착시트	EL608	탈취제
EL104	토너카트리지	EL723	목재 성형 제품
EL107	문서파일류	EL725	구조재용 합성수지 성형 원료
EL174	사무용 칸막이	EL726	목재·합성수지 복합 성형제품
EL241	페인트	EL727	바이오매스 유래 합성수지 제품
EL243	보온·단열재	EL260	벽지 및 종이제 내장재
EL247	조립식 바닥 난방 시스템	EL244	건설용 방수재
EL250	창호 및 창호 부속품	EL246	실내용 바닥 장식재
EL251	접착제	EL248	벽 및 천장 마감재
EL252	장식용 합성수지 시트	EL249	바닥충격음 완충재
EL253	이중 바닥재	EL721	합성수지 제품
EL259	건축용 실링재	EL722	재활용 고무 제품
EL321	화장지	EL743	무기성 토목·건축자재
EL326	광택제	EL744	슬래그 가공 제품
EL507	차량용 제동장치 마찰재	EL745	블록·타일·판재류
EL605	산업용 세정제	EL746	골재 및 미분말

환경성·물성 통합 신청서비스

서비스 개요



- 환경표지 인증 신청 준비 기업의 시험 신청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환경성 시험과 물성 시험을 한 번에 신청하고 통합 시험성적서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지원 대상



- 환경표지 인증 신청 준비 기업 중 환경성·물성 시험이 모두 필요한 제품군
(페인트·접착제·건축용 실링재)

운영 방식



- 환경성 시험 : 제품시험분석실에서 직접 수행
- 물성 시험 : 기술원과 협약된 외부 시험기관에 의뢰

결과 제공



- 환경성 및 물성 시험결과를 통합 시험성적서 1건으로 발급
- 환경표지 인증심사실로 시험성적서 송부

수수료 감면



- 환경성 시험 : 환경표지 인증기업 30%, 중소기업 50%, 사회적 경제 기업 70%
- 물성 시험 : 협약된 외부시험기관 기준에 따라 감면혜택 적용

시험분석 신속 서비스

서비스 개요



- 환경표지 인증 신청·갱신 일정에 맞추어 일부 시험항목을 기존 시험 소요 처리기간보다 단축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적용 분야



- 소형챔버 방출시험(KOLAS 인정 분야), 무기물질 시험
※ 모든 시험에 일괄 적용이 아닌 일부 신속 처리 가능 항목 중심으로 운영

처리기간



- 소형챔버 방출시험 : 영업일 기준 10일(기존대비 ▼50% 시간 단축)
- 무기물질 시험 : 영업일 기준 6일(기존대비 ▼50% 시간 단축)

활용 대상



- 환경표지 인증 신청·갱신 일정이 임박한 기업
- 제품 출시·납품 일정에 맞춘 시험성적서 확보가 필요한 기업
- 반복·추가 시험 또는 제품 개선 후 재시험이 필요한 기업

이용 안내



- 사전상담 필수 : 시험항목·시료 상태·접수 현황·장비 운영에 따라 적용 여부 상이
- 기본수수료 적용 : 신속 서비스 신청 시 시험수수료 감면 미적용

주요 문의사항

Q1 시료명이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하나요?

- 시험성적서 발행 전 : 시험신청서 수정 후 접수처로 송부 시 변경 가능합니다.
- 시험성적서 발행 후 : 시료명 변경 불가능합니다.

Q2 시험성적서를 일부만 받았어요.

- 여러 항목을 신청한 경우 완료된 시험성적서부터 순차적으로 발행합니다.
- 전체 항목 중 일부 시험성적서가 먼저 발급되어 따로 수령될 수 있습니다.

Q3 시험성적서를 분실했어요.

-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재발행 신청 가능합니다.
- 재발행 신청서 작성 후 접수처로 신청하여 처리됩니다.
- 재발행 수수료 : 3,300원/건

Q4 시험기간을 단축할 수 있나요?

- 일부 시험항목은 신속 서비스를 통해 처리기간의 50% 수준으로 단축 가능합니다.
- 소형챔버 방출시험 : 기존 20일, 신속 10일(영업일 기준)
- 무기물질 시험 : 기존 12일, 신속 6일(영업일 기준)
- 사전상담 필수, 신속 서비스 신청 시 시험수수료 감면 미적용

» 시험서비스 정보 채널 안내

제품시험분석에
대한 추가 정보를
얻는 방법

- 에코스퀘어 누리집

에코스퀘어 홈

친환경·녹색진흥

시험분석소개

제품시험분석

- 유튜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채널의 제품시험분석실
시험분석서비스 안내 영상

세상을 바꾸는 힘

부패·공익신고



당신의 용기

우리가 지켜 드립니다

인터넷 신고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방문·우편신고

국민권익위원회 종합민원상담센터 [세종]
정부합동민원센터 [서울]

상담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또는 ☎ 1398



국민권익위원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품시험분석실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3367)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3층 제품시험분석실

TEL: 1800-6750 FAX: 02-2284-1659

E-mail: eacinfo@keiti.re.kr